

영등포의 미래! 구민과 함께! 사랑합니다 

2016년도

감사사례집


행복중심
영등포

Contents



I.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2
II. 행정국 종합감사	28
III.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종합감사	52
IV. 인 · 허가 단속 분야 특정감사	79
V. 시비보조사업 특정감사	102
VI. 보상 · 기금분야 특정감사	116

I.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 감사사례 ◀

1. 장려금 등 기타재원 수입상황 미보고
2. 자체 감사활동 조치요구 부적정
3. 예산 전용 업무 부적정
4. 기타복리후생비 편성 부적정
5. 제1,2스포츠센터, 독서실 채용직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6. 예산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7. 하자보증이행각서 미 징구
8.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사적적립
9. 주차요금 체납관리 부적정
10. 주차요금 체납금 결손 처리 부적정
11. 시장조사 소홀
12. 견인차량보관소 견인차량 보관료 과소 징수
13.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할인 증빙자료 보존기간 미준수
14. 거주자우선주차장 정기배정자 할인 증빙서류 미징구
15. 노상주차장 시간주차 할인 증빙자료 미징구
16. 거주자우선주차장 대형 부정주차차량 견인용역 처리 부적정
17.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대관 사용료 징수업무 소홀
18. 체육센터 셔틀버스 차량점검 검사관리 소홀
19. 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전원 성범죄 경력조회 등 인력관리 소홀
20. 체육시설 사용료 및 보증금 반환 시 처리 부적정
21. 하자검사 관리 업무 소홀
22. 독서실 입실요금 면제자 기록대장 관리 소홀
23. 독서실 입실요금 면제 증빙서류 미첨부
24. 급여지급 증빙서류 담당자 확인 날인 소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34조와 제37조에 의하면 공단의 수입은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금, 영등포구에서의 전입금, 기타 재원이며 공단 이사장은 매분기말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일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 채용과 직원육아휴직 등에 따른 정부 장려금 총 00,000천원을 수급하면서, 매 분기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금운영상황과 수입상황에 기재하지 않고 자체 사원복지증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명절(추석,설날) 격려품으로 00,000천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13조 및 별표1에 의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법령, 단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간이 경과 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주의조치 하고,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단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은 개선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년 상반기 정기 감사시 청소년 독서실 시설 이용 요금 감면자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 감면)에서 규정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에게 사용료 감면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둥이 행복카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적정 부분을 감사시 확인 후에 주의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시설이용요금 감면자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 수립」 제도개선으로 조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3조, 제18조에 의하면 공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 목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년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으로 인한 퇴직급여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회계연도를 지나 0000.1.9. 예산 전용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기타복리후생비는 각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규정, 직책수행비 및 직급보조비, 선택적복지, 피복비, 침구류, 개인장비, 급량비, 자녀보육비,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등 총10가지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 규정」에는 이동통신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이 없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년 「이동통신 보조금 지급 변경계획내부 방침에 따라 000, 000, 00 00에 대해 매월 00,000원 ~ 00,000원의 이동통신요금 보조금(연간 총0,000,000원을 기타복리후생비에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동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12.1.~0000.4.4 제1·2스포츠센터와 청소년독서실 근무를 위해 신규 채용한 현업직 및 업무직 직원 총 00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및 제3절에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3억 원 미만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4년 ~ 2016년에 우수 근무 직원 산업시찰을 (주)00000와 계약하여 집행하면서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계약금액의 50%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인 (주)0000000에 착수금으로 계약금액의 100%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 업무처리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71조에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 경우에는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를 준용하며,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년 7월~0000년 6월에 준공한 구민체육센터 일반 급탕탱크 열교환기 교체공사 등 00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1항에 의하면 ‘구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품 등 구매지출 시 발생한 적립포인트에 대하여 개인포인트로 적립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과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4배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를 실시한 후에도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총 0,000건 000,000,000원에 대해 공시송달 등의 방법에 의한 압류조치를 미실시하는 등 체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운영수익금 일일·월간정산 및 평가는 팀장까지, 운영수익금 처리는 본부장까지 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주차요금 체납 안내 후 소명 등을 통해 결손처리 하는 과정에서 총 000건 00,000,000원 대해 내부결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자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구매지출지침」 5.구매지출 업무 절차 “가”항 3호에 의하면 업체선정 및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장 조사 후 최저단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품 등 구매지출에 따른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시 폐업한 업체의 견적을 유효한 시장조사의 가격으로 비교견적을 이행하는 등 지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에 의하면 견인과 관련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소요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보관시간에 따라 6.5톤 미만 차량의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6.5톤 이상 차량의 보관료는 30분당 1,2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0000팀에서는 감사 대상기간 중 총 00,000건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보관료는 징수하면서 2013.09.25. 11:07에 입차한 00\$0000 005 차량(6.5톤 미만)이 2013.09.25. 16:52 출차하면서 총 00:00에 해당하는 보관료 0,000원을 징수하여야 하나, 해당 차주에게 000원만 부과하여 0,000원을 과소부과하는 등 총 0건 00,000원을 과소 부과하여 견인차량 보관료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제40조(보존기간에 의하면 문서보존기간은 “별표4(문서보존기간 기준표)”에 의하여 보존토록 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할인 증빙자료는 주차요금 수납과 관련된 회계관계 증빙서류로 분류되어 보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근거로 0000.00.00.자 “0000계획(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류 처리)”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2015년 상반기 이전 배정자 신청서 및 할인 증빙서류를 일반서류로 분류하여 비배정자 신청서 및 할인 증빙서류와 함께 일괄 파기하는 등 문서보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의2(거주자 등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표)”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 서식안내에서도 기 사용자 중 할인대상자는 다음 반기 신청 시 할인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00000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접수 시 기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다음 반기 자동 신청되는 기 사용자 중 할인대상자에 대하여는 할인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의 증빙서류를 별도로 징구하지 않고 기 사용자의 할인항목을 그대로 인정하여왔음. 반기별 연속으로 배정받은 사용자의 경우, 배정기간 중 할인항목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반기별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할인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대상자의 배정점수 산정 및 할인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나 별도의 할인항목 증빙서류 징구없이 기 사용자의 할인항목을 인정하는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따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00000팀)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할인하게 되면 할인항목에 맞는 증빙자료를 촬영하여 보관함으로써 향후 해당 차량이 할인항목에 맞게 적정히 할인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감사 대상기간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항목 중 0000년은 근무자 000 외 00명이 00,000건을,0000년은 근무자 000 외 00명이 0,000건을 할인하면서 별도의 할인증빙 사진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 해당 주차요금이 적정하게 할인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시설 관리공단 보유 견인차량으로 견인이 불가능한 대형 부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을 편성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견인임차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0000팀)에서는 “0000년 0000팀 연간 단가계약 계획 (공매, 대형차)”[0000팀-0000]을 수립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대형 부정 주차차량 견인용역 수의계약을 추진하다가 계약체결 직전단계에서 계약업체의 포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공단에서 제시한 단가에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2013년·2014년 계약 체결 업체에 의뢰하여 민원처리를 한 후 처리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대형 부정주차 차량 견인을 위해 “2016년 00000팀 연간 단가계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에 응하는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의뢰도 없이 연간단가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2015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대형 부정주차차량 견인 용역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목적과 인원 등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사용료 수납으로 체육시설 허가를 대신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제0스포츠센터는 2015~2016년 체육관 대관시 사용 목적과 사용인원을 기입하지 않아 사용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고 사용허가를 하는 등 사용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대일여행사와 체결한 「셔틀버스 운행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5. 셔틀버스 유지 관리, ‘마’항에 의하면 “업체”는 정기적으로 셔틀버스 소모품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이상 시 교체 후 교체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제0스포센터에서는 0000년~0000년 까지의 기간동안 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 관리를 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상 명기되어 있는 셔틀버스 소모품 정기점검 사항에 대하여 전문정비 업체 등을 통한 차량점검 실시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용역 수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전원 성범죄 경력조회 미 실시 등 인력관리 소홀

□ 관련규정

- 대일여행사와 체결한 「셔틀버스 운행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6. 운전원 인력관리, ‘가’항 3호에 의하면 운전원은 만30세 이상 65세 이하의 34인승 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되, 신분상 결격사유(성범죄 등)가 없는 운전원을 채용 및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제0스포센터에서는 0000년~0000년 까지의 기간동안 체육센터 셔틀버스 용역 관리를 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상 명기되어 있는 성범죄 여부에 대한 조회결과를 미확인하고서도 배치를 승인하는 등 운전원 인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의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고,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지출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제0스포츠센터에서는 수강료, 사물함보증금 환불 처리 시 회원본인 명의외 계좌로 환불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강 환불, 변경 신청서’상 기재되어있는 위임장의 작성 없이 환불처리를 하였으며, 회원명과 상이한 채주의 계좌에 환불처리를 하는 등 반환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제0스포츠센터에서는 2010년~2010년에 준공한 구민체육센터 000 보수공사 등 00건의 공사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실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에 의거 독서실 입실요금 면제자 기록대장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년~0000년 도림0동,신길0동,신길0동,신길0동,신길0동,신길0동,대림0동,대림0동 청소년 독서실의 입실요금 면제자 기록대장과 독서실 수입금 현황보고 상의 면제자 건수가 00건 불일치한 사실이 있고, 000가 독서실 입실요금 면제자 기록대장은 분실하여 대장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정의 청소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등에 대하여 독서실입실요금 전액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0000년~0000년 신길0동, 신길0동, 신길0동, 신길0동, 대림0동, 양평0동 청소년 독서실 입실요금 면제처리를 하면서 다둥이 카드, 국가유공자 증빙 서류를 미첨부 하는 등 총 00건에 대해 면제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요금, 공무원의 보수 등 계약 이외의 경비는 주관 과장이 납입고지서, 납입통지서, 청구서 또는 지급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 이를 확인, 지출 결의서를 첨부하여 재무관의 확인을 받은 후 지출원에게 지출 요구하여야 함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6년 1월~10월까지 00개소 청소년 독서실 현업직 근무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지급 증빙서류인 출근 기록부에 담당자 및 팀장의 확인 날인을 누락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Ⅱ. 행정국 종합감사

▶ 감사사례 ◀

1. 유연근무자 복무점검 소홀
2. 동호회 운영 관리 소홀
3.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 정산서류 관리 소홀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소홀
5. 위탁용역 사업비 관리 부적정
6.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 원천징수 미 실시
7.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8. 하자 관리업무 소홀
9.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 교육경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10. 비진학 청소년 생애 설계 워크숍 정산 부적정
11. 시설공사 정산 소홀
12. 외국인 인감대장 이송업무 처리 소홀
13. 인감증명 발급 업무처리 소홀
14.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 공고
15. 생활체육 단체지원금 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16. 구립여성합창단 운영비 지원 정산 소홀
17.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자 관리 소홀
18. 여행업체 보증보험 확인 업무처리 소홀
19. 다중이용업소 허가등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 미통보
20. 과징금 운용계획 미수립
21. 노래연습장 간판표기 지도감독 소홀
22. 하자 관리업무 소홀

1

유연근무자 복무점검 소홀**□ 관련규정**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3461(2014.09.30)호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기관별로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8시 이전 조기 출근자, 7시 이후 야간 퇴근자의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각각 출근 또는 퇴근 지정 -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4년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통보 받았음에도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 등 출·퇴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동호회별 사업계획 신청에 의한 활동비를 행사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 집행 요령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 받아야 함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 ~ 2014년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업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제출을 누락하는 등 동호회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159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은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4년 3/4분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 정산서류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1조(지도 및 감독)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조사 결과가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센터에 통보한 후 조치결과를 보고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2013년 ~ 2015년 「00 00(00)체험단 운영」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5.계약조건 다. 위탁사업비 관리 1) 과업수행자는 영등포구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계산서·견적서 및 무통장입금표 등 지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에 정산하되 그 정산서를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5년 00 00체험단 및 00체험단 운영 위탁사업비 총 00,000,000원 을 용역 업체에 지원한 후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집행내역에 따른 집행내역만 제출 받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4조와 제145조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5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면서 위탁사업비 정산시 2013년 00 0000 교육 강사료 등 총 00건 00,000,000원의 강사료를 지출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정산해 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징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와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계획」(0000과-0000호, 2012.0.0.)에 의하면 관내 중·고등학교의 창의인재 육성에 필요한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에 사용하도록 경비를 지원하고, 교부된 교육 경비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 변경 시 구청의 승인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5년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학교에 운영 경비를 지원한 후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학교 홍보 책자 제작0, 파주 영어마을 00고등학교 국제 교류 참가비, 뮤지컬 관람비 지급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호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2년~2014년에 시행한 00정보문화도서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등 00건에 대하여 하자관리를 하면서 정기하자 검사 및 만료 하자검사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2015년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 추진 계획」(0000과-0000호, 2015.0.00.)에 의하면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명문고 육성을 위해 대학진학 우수고에 대해 교육경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교부된 교육 경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정보화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행하도록 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5년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 사업 심사에 따라 선정된 00고등학교에 0천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지원된 보조금 중 교직원 연수비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승인하였으나, 00고등학교에서 실제 교부된 교육 경비를 교직원 연수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2015.12.30. 교직원 00명의 0000 여의도점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비진학 청소년 생애 설계 워크숍 위탁용역 시행」(0000과-0000호, 2013.00.00.)에 따라 관내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2일간 12시간(시간당 000,000원)의 강의를 하도록 위탁용역을 체결하였고, 위탁사업비 지급 시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44조 및 145조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비진학 청소년 생애 설계 워크숍 교육을 000 경영연구소에 위탁하여 점심시간 포함 00시간을 강의 하였으나, 결과보고서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00시간 강의한 것으로 착오 보고한 사실이 있었으며, 강의료 0,000,000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징수)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2.11.23)]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와에 사용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00정보문화도서관 옥상 바닥 우레탄 방수공사 등 0건을 준공하면서 내역서에 포함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금액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총 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0000과에서는 2013년 00재단 사무실 보수 및 서고 조성공사 등 0건을 준공하면서 내역서에 포함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금액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총 0,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징수)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 3(인감대장의 이송)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14일 이내 / 2016.1.12 개정)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1월 ~ 2015년 12월 기간 동안 체류지 변경신고한 000명의 인감대장을 14일을 초과하여 송부하여 외국인 인감대장 이송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의하면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6월 ~ 2015년 8월 기간 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본인 서명 또는 무인 누락 및 대리인 무인 누락 등 총 00건의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채용)」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000(2014년 채용, 영등포로00길 0-0) 등 총 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연도별 채용계획 및 결과에 의한 예비후보자 등을 충원하지 않는 등 기간제 근로자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정산검사), 제25조(감독 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2013년 00야구단 육성지원금 등 총 00건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55조(개산급의 정산)」에 의하면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4년까지의 기간동안, 영등포 여성구립합창단 운영비 총 00,000천원에 대하여 정산검사 등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신고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23조에서는 등록·신고를 한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등록·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했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등록·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최초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00건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최초신고에 의한 납본을 제출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제출)



□ 관련규정

-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에 의하면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5년 1월~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 0000투어(대표:000) 등 총 000개 여행업체에 대하여 보증보험 만료일 전에 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업체에 대하여, 제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제출)



□ 관련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휴업/폐업/폐업 후 영업 등의 재개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행정기관(소방서)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2015년 까지의 기간동안, 000스크린 골프존(대표:000) 등 총 00개의 골프연습장 신규등록건에 대하여 해당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행정기관(소방서)에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통보)



□ 관련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제1항(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운영 및 교육, 자율지도용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한 게임물의 제작 및 유통, 게임장의 건전화 및 유해환경 개선 등에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해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2015년 까지의 기간동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를 '00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간판에는 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2015년 까지의 기간동안, 신규등록한 00노래 연습장(000, 버드나루로00길 0, 지하0층) 등 총 0개의 대상업소가 '00노래방'으로 간판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간판 표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호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2년~2015년에 시행한 00체육센터 수영장벽면 보수 공사 등 00건에 대하여 하자관리를 하면서 정기하자 검사 및 만료 하자검사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Ⅲ. 지역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종합감사**

▶ 감사사례 ◀

1. 시내 면세점 협약 업무 처리 소홀
2. 지식산업센터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및 위법사항 방치
3. 공장등록 변경사항 조사 미실시
4. 공장등록신청 업무 처리 기한 미준수
5.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검사 소홀
6. 영등포구 00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부과
8. 개인서비스 요금, 생활필수품 월간 및 주간요금 미게시
9. 대부업 기간제 근로자 임금 과소 지급
10. 통신업체 시정권고 후속조치 미이행
11. 담배사업 위반자 외부통보 건에 대한 행정처분 미실시
1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처리 지연
13.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공고 미실시
14.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시 시장조사 부적정
15. 산재·고용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16. 급량비 지급 부적정
17. 세출예산 집행 품의 부적정
18.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19.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자 확인 소홀
20. 공금계좌 관리 부적정
2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22. 강사료 원천징수 부적정
23. 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처리 지연
24. 보조금 전용 통장 미사용
25.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검사 소홀

□ 관련규정

- 「영등포구청 & 00 0000 0000 업무제휴 협약서」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영등포구청과 (주)00 0000 0000는 면세점 사업 협력 진행을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의 업무제휴 사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주)00 0000 0000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게 할 경우 공동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최종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2015년 0월 00일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0000에서는 2015년 0. 00. (주)00 0000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위해 지역경제과 등 0개과 소관의 00개의 구체적인 업무제휴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고, 2010. 0. 00. (주)00 0000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0. 0. 0. 상호 체결한 업무제휴 협력방안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그 이후 2016. 0. 00. 업무제휴 협력방안 추진 0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기까지 약 00간 협약서 제3조에서 규정한 공동 사업계획안 수립 및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물론 4개과 소관의 00개안을 추진하기 위한 (주)00 0000 0000와의 공식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시내 면세점 협약 후 업무제휴사항 추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28조의8,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임대하는 경우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0000.0.00. 00동 000000 공장시설 입주지역인 0000호, 0000호, 0000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00업을 주로 하는 (주)000000이 불법으로 입주하였다는 서울민원을 접수한 후, 0000.0.00. / 0000.0.00./ 0000.0.0. 3차례에 걸쳐 입주가 능하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여 민원인에게 의혹 및 불편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계속된 동일 민원에 대해 0000년 00월말까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주)000000의 소명서만 받고 영업중지 및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 확인 결과 0000호는 공실로, 0000호와 0000호는 (주)000000가 현재 입주해 영업중인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4항,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공장등록 변경현황사항을 조사하겠다는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는 실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변경 등록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00건의 공장등록 신청을 접수 받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기한인 0일을 넘어 최대 00일까지 처리기한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의 검토, 목적 사용여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집행절차의 준수여부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2016년도에 0000 이벤트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면서 00지출 사용, 00(000)지급시 1인당 0원을 초과 지급, 경품(상품권) 지급대장에 경품수령자의 자필이 아닌 00회에서 일괄 기록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2013년 「서울0000소 영등포구 000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호에 의하면 보조금은 해당 보조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등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도 0000소 영등포구 00회에서 00기업 비즈니스 교류회 교류비로 0,000,000원을 사용하겠다는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영등포구 00회에서는 이 교류비를 2013.10.4. 홍보TV 구입비(0,000,000원)와 회의실 장비교체비 (0,000,000원)로 사용하는 등 승인된 사업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 제2항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2항 제2호 따른 처분을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9월에서 2016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주식회사 00(대표: 000) 등 3개의 행정처분건에 대하여 6개월 이내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에따른 과태료 처분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관련규정

- 「물가안정 관리대책 추진계획」에 의하면 개인서비스요금 매월1회(45종), 주요 생필품가격(26종) 주1회 가격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하도록 계획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4년 9월, 11월 각 해당월에 개인서비스 월별 요금을 미게시 하였으며, 2014년 10월 2주부터 2016년 5월 1주까지의 기간동안 총 00회에 걸쳐 주간 생필품 가격을 미게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장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대부업 기간제근로자 000(000000-1*****)에 대하여 2013년 8월, 2013년 11월 2회에 걸쳐 주1회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누락하여 00,000원의 임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위반행의 시정권고)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구청장 등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보고 및 감독) 제1항에 따르면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8월, 12월, 2106년 2월 총 0회에 거쳐, 해당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명한 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직권말소 폐업, 공정위 및 서울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1월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으로부터 위법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 1차 2개월, 2차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으로 해당사항을 통보받았을 경우 추후 검찰조사 등을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0000에서는 2013년 7월에서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서로부터 담배소매인(000 등 총 00건) 등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해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4년도 0건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처리하면서 0000.0.00 (0.0공고만료) 신청한 민원에 대해 0.00접수하여 00일 지연하였고, 0000.0.0(0.0공고만료)신청한 민원에 대해 0.00 접수하여 00일 지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4년 00기 0000 관련 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4년 5월 20일 계량기 정기검사 서식을 지출을 통해 구매(금000,000원) 하면서 000 업체(0000 000-00-00000)가 이미 2013년 0월 0일 이미 폐업하였음에도 이를 시장조사 비교견적 업체로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시장조사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안전관리비를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2014년도에 시행한 2013년 0000 0000 전환공사 등 0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안전관리비 납부 및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하여 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를 집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5년 1월 ~ 2015년 5월 기간 중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총 0,0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의2 제3항과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 지출시 품의는 건별로 하여야 하며, 지출품의시 작성자는 정당한 채권자를 확정하고 관리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5년 부서운영비 지급 등 총 0건을 지출 품의하면서 사용시간, 사용업소, 채주 등이 상이한 신용카드 매출사항(2, 3건)을 1건으로 일괄 지출 품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4항과 제116조 및 별표5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징구,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사(수)조사 또는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검수)는 소액이라도 생략할 수 없고,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여 복수검사(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5년 간담회 회의자료 인쇄비용 지급 등 총 0건에 대해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와 제4호, 제5조 제1항에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자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이상 35세 이하의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청년인턴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등포구에 거주하지 않고 청년인턴제에 지원한 0명(000 금천구, 000 강서구)에 대해 청년인턴 신청서 기재사항만 확인하고 청년인턴으로 선정하여 총000,000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부서별 공금계좌 관리 계획」(재무과-14149호, 2012.8.30.)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금계좌를 법인카드 결제 계좌와 업무용 공금계좌 2개 보유를 원칙으로 타 공금 혼용·운용에 따른 회계오류 및 비리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한 공금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공금계좌로 법인카드 결제 계좌와 부서 대표 공금계좌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 대표 공금계좌에 2014.5.3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공금이 아닌 금액(과비, 상조회비)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는 등 공금계좌에 혼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10대 집행 지침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5.00.00. 00000센터 활성화 간담회비 등 총 0건 000,000원을 2015년도에 결재한 후 회계연도가 지난 2010.0.00.에 일괄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4조와 제145조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과에서는 2016.4.26. ~ 5.2. 지역000 0000제 00 00 000 000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사료 총 0,000,000원을 지출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징수)



□ 관련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2016년도 기간에 민원인으로부터 직업소개사업 0000정보 등 00건의 신청서를 받아 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경찰서의 신원 조회 완료후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통보 하는 등 직업소개사업 등록업무를 최소 0일에서 최대 00일 지연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보조금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지방보조시스템상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에서는 2015년 회계 00000협동조합과 00000체험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의 검토, 목적 사용여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집행절차의 준수여부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00000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지출 세부내역 미첨부 0건, 전자세금 불성실 신고 0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식대비 부적정 지출 등 총00건의 지출사항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고,
- 2014년~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00000체험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개발비·실행비 등에 대한 세부내역 미첨부,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등 총0건의 지출사항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2014년~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00000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활동비,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등 0건,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강의비 지급 부적정 등 총0건의 지출사항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IV. 인 . 허가 단속분야 특정감사

▶ 감사사례 ◀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선정 부적정
2. 하자·관리업무 부적정
3.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 확인서 관리규정 미준수
4. 환경오염배출시설 행정처분 사후관리 미실시
5. 폐수(대기)배출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미실시
6. 폐수(대기)배출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절차 미준수
7.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교육 미이수자 관리 부적정
8. 건설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 변경허가 처리 확인 미흡
9.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교육 미이수자 관리 부적정
10.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관리 소홀
11. 미신고 굴착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12. 개인하수시설 청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소홀
13.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14.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15. 신규영업허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자 사후관리 소홀
16.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신규 영업신고 후 사실조사 미실시
17.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채권확보 미흡
18.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실시
19.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20. 식품관련업 등록 시 건강진단서 징구 소홀
21. 공중위생업 행정처분(개선명령) 부적정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선정 부적정 **관련규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 규정에 따르면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水上建物)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현지실태 조사를 통하여 소유자 등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4년 ~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총 00건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 및 부과를 실시하지 않았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호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0년~2015년에 시행한 구청사본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공사 등 00건에 대하여 하자관리를 하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를 일부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환경부훈령 제1155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시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관리대장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 현황 등을 기록하고 과장까지 결재받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서 분실 및 파기 시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 지도 점검시 활용하는 위반확인서 및 시료채취확인서 발급번호 부여시 기관장 결재 등의 사항이 없으며, 확인서를 실제 발급하고 반납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확인서관리대장에 담당팀장 결재로 갈음하였고, 2000-0호와 2000-00호 확인서가 분실 파기되었음에도 기관장의 결재를 별도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환경부훈령 제1155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조업정지 1개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한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한 번, 처분종료일에 최종 확인하고 이를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로 작성 후 5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5.6.25 0000 등 0개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0일의 행정처분을 한 후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업체별 두 번 이상 확인하고 그 이행실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방지사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사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4.7.8. 서울특별시 00000과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업체(0000사, 0000)를 적발하여 위법사항을0 통보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조업정지 00일)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행정처분)



□ 관련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및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 기관 및 기한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폐수(대기) 배출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경고 등 총0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면서 위반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3항과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환경부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 ~ 2015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주)0000 등 총 00곳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 이수촉구 및 과태료 부과(00,000천원) 등의 행정처분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이수 촉구 후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결격사유)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9.9. 0000 공동대표자(000)와 2014.3.14 0000기계 공동대표자(000)에 대해 법 제24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 신규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3년마다 1회 각 6시간의 실내 공기질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4년 실내 공기질 보수교육 대상기관인 0000병원 등 총 0 곳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 이수촉구 및 과태료 부과(0,000,000원) 등의 행정처분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이수 촉구 후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5년 지하수 정기검사 대상인 00 중화요리(영등포동 000-00) 등 00건 총 0,000,000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대상건에 대하여 수질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검사 안내 후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신고대상인 000(000동 00-00 외0필지) 등 00건 총 00,000,000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을 실시하고,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2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한 과태료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개인하수시설의 청소를 미이행한 000(000동00번지) 등 000명 총 00,000,000원의 과태료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청소 안내 후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와 제89조에 의하면 위생업소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4 ~ 2015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일 당시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거나,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분할할 수 없음에도 분할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등 0000 등 총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 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22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출입·검사·수거 등을 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 ~ 2015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자체 및 외부 점검을 통해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총000개 업소 (2013년 000건, 2014년 000건, 2015년 000건)에 대해 6개월이내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후 관리(출입·검사·수거 등)를 해야 함에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유흥·단란주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받지 못한 경우 영업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유흥주점 신규 영업허가를 하면서 000 등 총 0곳에 대하여 식품위생교육을 3개월 이내에 받기로 이행각서를 받고 유흥주점 신규 영업을 허가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88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신고를 받은 관청은 해당 집단급식소의 시설에 대해 신고받은 사항을 15일이내에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 ~ 2015 집단급식소 000 00병원 등 총00곳에 대해 신규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와 「지방세 기본법」 제61조, 제91조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 ~ 2015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 대상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재산 압류를 위해 부동산 소유 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압류 재산이 있는 체납자 총 00건에 대해 압류를 하지 않는 등 체납 활동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압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와 제10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정해진 시간만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대한과제협회 남부지회, 한국 휴게음식업 중앙회, 단란주점중앙회 등으로부터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로 총 00명(2012년 휴게 00, 유흥 00, 단란 00개소/ 2013년 제과 00개소)을 통보 받은 뒤 교육 이수 독촉 및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00,000,000원) 등의 행정처분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이수촉구 후 과태료 부과)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업소 지정증·표지판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00로 000, 지층 B000호 (00동0가) 소재 일반음식점 “0000”외 0곳의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모범업소 표지판이 회수되지 않는 등 모범업소 지정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5항, 제40조(건강진단)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의하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장티푸스, 2.폐결핵, 3.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을 수리하면서, 건강진단 관련 서류에 대한 미확인 오확인 등의 사유로 총 00건의 영업신고 사항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규정에 따르면 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를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 시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위반한 0000원 등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개선명령을 한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V. 시비보조사업 특정감사

▶ 감사사례 ◀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예산배정 부적정
2. 기간제근로자 임금 과소지급
3. 기간제근로자 임금 과다지급
4.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검사 소홀
5. 퇴직적립충당금 미반환
6. 퇴직적립충당금 미적립
7. 예산의 목적외 사용
8. 소득세 과다징수
9.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10.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11. 산출기초조사서 시장조사 부적정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예산배정 부적정**□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3항과 별표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운영비의 세부 목으로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 2015년 영등포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를 교부하여 그 내역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000000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임의로 운영비항에 세부 목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정산완료 처리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장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노숙인 거리상담반 기간제근로자가 2014년 1월과 6월 휴일(설날, 6·4지방선거일)과 야간에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총 0,000,000원을 과소 지급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지급)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4장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1회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당해 주간 근무일을 만근한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 기간제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출근부에 따른 근무일수, 주차, 월차 휴일근무 등을 정확하게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년 8월분 총0건에 대하여 000,000원을 과다 지급
- 0000과 기간제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출근부에 따른 근무일수, 주차, 월차, 휴일근무 등을 정확하게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년 7월 주차0일 00천원, 2013년 12월 휴일0일 000천원, 2015년 10월 월차0일 00천원을 000 등 5명에게 총000천원의 임금을 과다 지급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의 검토, 목적 사용여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집행절차의 준수여부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잔액의 반납 시 발생된 이자를 그 외수입(224-06) 혹은 기타이자수입(216-05)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과에서는 2013년~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청소년 육성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한 총 0건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자(총0,000원)를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받지 않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의 경우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영등포구 000000센터에서는 2012년 2월~4까지의 기간동안 1년미만 근무자인 000(2012.02.20~2012.04.30)에 대하여 총 3개월 000,000원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 총당 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납 등의 적절한 조치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연금 계좌에 방치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관련규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의하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적내용

- 000000교실에서는 2013년 2월 1일에서 2015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근무했던 '000'에 대하여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00개월의 기간동안 000,000원(00,000원×00개월)의 퇴직급여 총당금을 미적립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지급)



□ 관련규정

- 「영등포구 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등)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00센터에서는 2013년 1월에서 2014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000 지원단 회의(2013.01.31, 0명참석, 커피 0잔구매 / 포장커피구매), 0000 위원단 회의(2014.03.25, 0명참석, 커피00잔구매)를 진행하면서 실제 필요이상의 커피를 구매(총 00,000원)하는 등 예산편성의 목적외 용도로 지출
- 000000교실에서는 2013년 6월에서 2014년 7월까지의 기간동안 총0회에 걸쳐 0,000원에 해당하는 국제전화(대상국가 미국)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000000교실 전화사용)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외 용도로 지출
- 영등포 00000복지관에서는 평생교육 강사(000)의 자녀사망 시 사업비-복지사업비-0000교육사업비를 통하여 조의금 0만원을 지출(2013.05.30)
- 영등포 00000복지관에서는 주말농장 김치냉장고를 구입(2013.03.15, 가액: 000,000원)하면서 '시설비-자산취득비'가 아닌 '복지사업비-주말농장사업비'로 구매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외 용도로 지출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144조, 제145조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의하면 기타소득이 경비 등을 제외(80%)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00센터에서는 2015년 2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동안 '0000 분과 위원회 강사비' 등 총 0건 000,000원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은 일시적 우발적 강의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자인 강사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총 0건 00,000원을 원천징수한 이행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제144조, 제145조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교실에서는 2015년 4월에서 7월까지의 기간동안 영어특강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총 0회 각 00만원 총 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미징수
- 00000교실에서는 2013년 1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동안 영어특강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총 0회 각 00만원 총 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미징수
- 0000000센터에서는 2013년 ~ 2015년 상담사 상담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정산시 2013년 상담사 활동비 등 총 00건 00,000,000원의 활동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정산
- 00과에서는 2013년과 2014년 000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산시 2013년 00 000 아파트 요가수업 강사비 등 총 0건 0,000,000원의 강사료를 지출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완료 처리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수정 신고)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등) 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00000교실에서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영어교재 구매’ 등 총 00건 0,0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확정신고를 미이행
- 00000교실에서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원아모집 현수막’ 등 총 00건 0,0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구입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확정신고를 미이행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2호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센터에서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총0회에 걸쳐 0,000,000원에 해당하는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면서 타견적 업체인 000디포(000-00-00000)가 2010.12.31 폐업 신고 되어 더 이상 관련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장조사 비교견적 업체로 기재하는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시 시장조사를 적정하게 미이행
- 영등포 0000복지관에서는 0000농장 음향장비를 설치·구매(2013.04.10, 가액 0,000,000원)하면서 타견적업체인 000이브이(000-00-00000)가 2009.08.31 폐업 신고되어 더 이상 관련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시장조사 비교견적 업체로 기재하는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시 시장조사를 적정하게 미이행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6에 의하면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 23호(2012.02.08)〕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공사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이 사용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도급비 000천원을 과다 지급
- 0000과에서는 2013년, 2014년 신길로 등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공사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이 사용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도급비 0,000천원을 과다 지급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VI. 보상·기금분야 특정감사

▶ 감사사례 ◀

1. 옥외광고물기금 보험료 정산 부적정
2. 옥외광고물기금 피복비 구매 집행 부적정
3. 재난관리기금 시설공사 정산 부적정
4. 재난관리기금 하자 관리업무 부적정
5. 성평등기금 하자 관리업무 부적정
6. 도로굴착기금 기금자산의 비효율적 운용
7. 도로굴착기금 감독여비 과다 지급
8. 도로굴착복구기금 하자 관리업무 부적정
9. 도로굴착복구기금 정기예금 운용 수익 감소 등 기금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
10.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의 분기별 운용실적 보고 누락
11. 정기예금 운용 수익 감소 등 기금자산의 비효율적 운용
12.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자 사후관리 부적정
13. 노인복지기금 보조금 집행사업 정산검사 소홀
14. 식품진흥기금 지출시 소득세 미징수
15. 식품진흥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16. 식품진흥기금 집행시 이중 지출처리
17. 식품진흥기금 피복비 구매 집행 부적정
18.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1

옥외광고물기금 보험료 정산 부적정**□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을 때에는, 하도급 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의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 금액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에서는 2014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0건과 2015년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용역 0건에 대해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계약대상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 미 납부시에는 이를 차감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총 0건 0,0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피복은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 방한피복을 구매한 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직원 0명(2013년 0명, 2014년 0명)에게 0,000,000원 상당의 방한피복을 지급하였고, 2013년 기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외근직원 피복비(내복)를 0차례 총 000,000원을 구매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2012.11.23)〕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와에 사용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건설업자에게 보험료 납부 내역서와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보수공사를 준공하면서 내역서에 포함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금액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총 0,00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호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1년~2014년에 시행한 2011년 저지대 자동펌프 설치공사의 0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관리를 하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1년, 2년) 중에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 하자검사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라 계약(물품구매 포함)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 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4년에 시행한 여성복지회관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 등 0건에 대하여 하자관리를 하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1년) 중에 정기하자 검사 및 만료 하자검사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에 의하면 기금의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5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심의(00과-0000, 2015.00.00)에 0,000,000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도록 심의 하였음에도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안전행정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우리구 「관내출장여비·특근매식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관내출장여비 00일을 지급 받은 후 잔여 일수에 대한 감독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일수를 착오 산출하여 000 외 0명에게 총 00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호에 의하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에 시행한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연간단가)에 대하여 하자관리를 하면서 담보책임 존속기간(1년, 2년) 중에 만료하자 검사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정기에금 운용 수익 감소 등 기금 자산의 비효율적 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에 의하면 기금의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3조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5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심의(00과-00000, 2015.00.00)에 0,000,000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도록 심의 하였음에도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금 위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2조에 따라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실적을 매분기별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각 기금의 운용실적을 2013년 1회, 2014년 2회, 2015년 1회 보고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구금고와의 약정에 따라 정기예금 예치 후 만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만기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되나 이후에는 만기시점의 기간별 신규 정기예금 약정이율의 1/2(단, 공공예금이율보다 낮을 경우 공공예금 이율)을 적용받아 지연해지 시 이자 수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2.0.00. 예치 00,000천원 등 정기예금 총 00건 0,000,000천원을 만기 후 3개월을 각각 31일~87일 경과하여 해지 및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함에 따라 만기일 3개월 경과 직후 재예치 했을 경우보다 이자수익금이 약 000천원 감소되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용자금의 사용 등) 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용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용자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휴·폐업 또는 영등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2년 용자지원 업체에 대한 용자금 사용현황 조사계획 수립(2013.11.25.) 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의 검토, 목적 사용여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집행절차의 준수여부 등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미이행 보조사업에 대한 보완요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0과에서는 2013년~2015년까지 노인복지기금 보조금 집행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재무회계규칙 미이행 등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의하면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기간동안 나트륨 저감화사업 등 관련사업에 대한 강사소득을 지출하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등) 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적내용

- 0000과에서는 2013년~2014년까지 식품위생기금을 통한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총00건 금00,000천원에 해당하는 지출액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 관련규정

-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및 「영등포구 세출 예산 집행지침」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2013년 00월 00일 ‘조리장 화상(CCTV) 공개 우수음식점 표지판 구매’ 전 총000천원을 지출하면서, 신용결제 및 해당업체(디자인 000 000) 이체로 이중 지출하여, 해당금액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피복은 업무성격상 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현장단속을 목적으로 00명 전 직원에 대한 방한피복을 구매하면서 실제 야간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 00명 금0,000천원 상당의 방한 피복을 구매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시정(환수)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②항에 의하면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지적내용

- 00과에서는 위생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2015년 00월 0일, 00월 00일 총 0차례에 걸쳐 사무관리비(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를 통해, 금 0,000천원의 식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조치사항

- 행정상 주의

2016 영등포구 감사 사례집

- 발 행 인 :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 편 집 인 : 감사담당관 박종권
 - 발행부서 : 감사담당관(감사팀)
 - 편집참여 : 김종석(팀장), 김문선, 지윤희
 - 발 행 일 : 2017년 12월
 - 전 화 : ☎ 02-2670-3007
-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002-0115-2017

<http://www.ydp.go.kr>

